

경기도 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6년 3월 16일

문화공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06년 2월 27일 경기도지사

나. 회부일자 : 2006년 2월 27일

다. 상정일자 : 2006년 3월 10일(제20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문화공보위원회)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경기도박물관장 이종선)

개정이유

- 「경기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으로 공무원의 근무시간이 동·하절기 구분 없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일원화됨에 따라 박물관의 관람 시간을 공무원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변경하고,
- 관장의 관람시간 조정에 대한 재량범위를 넓힘으로써 주민편의를 위하여 필요할 때 관람 시간의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 장애인복지 관계법령의 취지에 맞춰 관람료 면제대상에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추가하고 박물관 구내에 관람객 편의증진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박물관운영자문회의 횡수 및 위원회 간사 직명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관람시간을 연중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고 공휴일과 특별전시 기간에는 관람시간을 1시간 연장하도록 함.(안 제3조 제1항)

나. 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관람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제3항)

다. 관람료 면제대상자에 장애인과 동행하는 1인을 추가하여 장애인 복지관계법령의 취지를 반영함.(안 제5조)

라. 박물관 구역 안에 매점, 기념품판매소 등 관람자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 2)

마. 박물관운영자문위원회의 회의 개최 주기를 매분기 1회에서 연 2회로 변경하여 회의의 내실을 기하는 한편, 위원회의 간사를 '학예연구실장'에서 '교육홍보팀장'으로 바꿈으로써 박물관 직제 개편에 따른 직명의 변경사항을 반영함.(안 제14조 및 제15조)

바. 관계 전문가의 참여폭을 넓히고자 유물감정위원의 수를 '15명'에서 '25명'으로 증원.(안 제19조)

3. 전문위원 검토결과

- 동 조례개정안은 「경기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과 직제 개편 등에 따라 현실과 불부합한 조례 내용을 개정하여 관람객의 편의 증진을 통한 문화시설의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고 도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써,
- 2005년 9월 5일부터 9월 26일까지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한 입법예고 과정을 거쳐 2005년 10월 21일 경기도조례규칙심의회 의결과 2006년 2월 15일 우리 위원회의 사전설명회를 거친 상정안건임.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분석한 결과
 - 제3조제1항은 관람 및 매표 시간을 동·하절기에 1시간씩 차이를 두었던 것을 연중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일원화하고 토요일, 공휴일, 특별전시회 기간에는 1시간을 연장하여 오후 7시까지 관람토록 하였으며,
 - 제3조제3항은 관람시간의 조정 시 “국민 또는 외국 사절단의 관람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로 한정하던 것을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로 관장의 재량 범위를 넓힘으로써 관람객의 편의를 위해 수시로 관람 시간의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 제5조제4항은 관람료 면제 대상을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

거 등록된 장애인 및 장애인과 동행하는 1인을 추가하여 장애인 우대 정책의 취지를 살렸으며,

- 제11조의 2항은 그동안 박물관내에서 운영하는 매점 및 기념품판매소의 운영을 상위 법령인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시행령 제16조에 근거를 두고 있었으나 지방자치의 취지에 맞게 자체 조례에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관람객에게 좀더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 제14조제1항은 매분기마다 개최하던 박물관운영자문위원회를 연 2회 상·하반기에 개최하여 횟수는 줄이는 대신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나 지난번 사전설명회 시 연 2회로 제한하는 것은 박물관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 수렴 기회를 축소하고 긴급한 회의개최 등의 사유발생 시 융통성 있게 대처할 수 없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연 2회 이상”으로 수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바 심의 과정에서 동 사항이 함께 검토된 후 수정 의결하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분석됨.

- 제15조제1항은 경기도 직제가 개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간사의 직명이 학예연구실장으로 되어 있어 변경 직명에 맞게 교육홍보팀장으로 변경하는 것이며,

- 제19조의2항은 유물감정시 각계 전문가의 참여폭을 넓히기 위하여 유물감정위원 수를 당초 “15명”에서 “25명”으로 증원하는 사항으로 공정한 감정 평가를 통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근거가 마련 될 것으로 판단됨.

- 이상과 같이 동 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 결과 주민의 이해관계와 연결된 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한 공정회를 거친 결과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며 대부분의 개정 조문 내용이 관람객에게 보다 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취지를 살리고 직제 개편 등에 따라 현실과 불부합한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수정안요지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6. 3. 10 장호철 위원외 1인

나. 수정사유

- 박물관운영자문위원회 회의를 “연 2회” 로 규정하고 있으나, “연 2회 이상”으로 수정하여 회의 운영의 내실을 기하려는 것임.

다. 주요골자

- 제14조 중 “연 2회”를 “연 2회 이상”으로 한다.

7. 심사결과 : 수정가결(만장일치)

8. 심사보고서 첨부

가. 경기도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중 수정안1부

나. 경기도 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안(수정안 포함)1부

다. 경기도 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안(당초안)1부

경기도 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수정안

경기도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4조 중 “연 2회”를 “연 2회 이상”으로 한다.

수정조례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제14조(회의) ①회의는 연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회의) ①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연 2회 이상”으로 수정하여 회의의 내실을 기함.

【 수정안 포함 】

경기도 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기도박물관관리및운영조례”를 “경기도 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라 한다.

제1장의 제목 “개관 및 관람”을 “박물관 운영”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평일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2. 토요일, 공휴일, 특별전시회 기간 :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제3조제3항 중 “국민 또는 외국사절단의 관람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로 한다.

제5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7조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및 그 장애인과 동행하는 1인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편의시설의 설치·운영) 관장은 관람자의 편의를 위하여 박물관 내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매점
2. 기념품판매소
3. 식당
4. 부설주차장
5. 그밖에 관람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4조제1항 중 “매분기 마다”를 “연 2회 이상”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학예연구실장”을 “교육홍보팀장”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15명 이내”를 “25명 이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당초 개정안 】

경기도 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기도박물관관리및운영조례”를 “경기도 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라 한다.

제1장의 제목 “개관 및 관람”을 “박물관 운영”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평일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2. 토요일, 공휴일, 특별전시회 기간 :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제3조제3항 중 “국민 또는 외국사절단의 관람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로 한다.

제5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7조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및 그 장애인과 동행하는 1인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편의시설의 설치·운영) 관장은 관람자의 편의를 위하여 박물관 내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매점
2. 기념품판매소
3. 식당
4. 부설주차장
5. 그밖에 관람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제5조(관람료의 면제) (생략) 1.~3. (생략) 4. 장애인복지법 제19조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5.~7. (생략)	제5조(관람료의 면제)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7조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및 그 장애인과 동행하는 1인 5.~7.(현행과 같음)	장애인복지 관련법령 취지 반영
<신설>	제11조의2(편의시설의 설치·운영)관 장은 관람자의 편의를 위하여 박물관 내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매점 2. 기념품판매소	관람객 편의 도모 증진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운영 근거 마련
제14조(회의) ①회의는 매분기마다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생략)	3. 식당 4. 부설주차장 5. 그밖에 관람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4조(회의) ①회의는 연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현행과 같음)	연 2회로 회의의 내실을 기함.
제15조(간사) ①위원회는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학예연구실장이 된다. ②(생략)	제15조(간사) ①----- -----교육홍보팀장-----. ②(현행과 같음)	직제개편에 따른 직명 변경
제19조(유물감정위원) ①(생략) ②위원은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유물감정에 조예가 있는 경기도문화재위원·박물관운영 자문위원·사계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생략)	제19조(유물감정위원) ①(현행과 같음) ②-----25명----- ----- ----- ----- ③(현행과 같음)	관계 전문가의 참여폭을 넓힘.